

한국 변경사 연구 시론 - 지대, 선, 영토*

윤 해 동**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북경조약과 변경지대 인식 변화 |
| II. 네르친스크조약과 조선의 변경지대 인식 | IV. 맺음말 |

<국문초록>

현대 한국인들은 15세기 초반 세종대에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영토가 완성되었다는 인식을 역사교육을 통해 되풀이하여 교육받는다. 그러나 백두산을 중심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이 자연적인 경계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인식이다. 그럼에도 이런 역사인식을 유지하고 그에 심각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영토의 닳에 빠질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

이 글에서는 경계 개념이 ‘지대로부터 선으로’ 이행해왔다는 기존 변경연구의 성과를 수용하여, 15세기 이후 한국의 북쪽 변경이 변화해온 양상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북쪽 변경에 변화가 생기는 두 가지 큰 계기를, 17세기 초반의 네르친스크조약과 19세기 중반의 북경조약으로 설정하였다. 두 조약은 모두 청과 러시아 사이에 맺어진 것이었으나, 그것이 조선과 청 그리고 러시아 사이의 경계에 몰고 온 변화는 심대한 것이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5)

**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

19세기 후반 국경이 확정되면서 사람들의 이동에는 제약이 가해지고, 주민들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작업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에도 영토개념이 정착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제국은 근대국가로서의 국민통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1905년 이후 간도문제는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였고, 국경선을 경계로 확정된 영토가 민족주의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간도영유권 문제는 청일간의 협상의제로 전환하였고, 이를 계기로 근대적인 ‘민족’의식이 대두하면서 ‘강역계승의식’ 나아가 ‘영토적 민족주의’는 더욱 확산되어갔던 것이다.

주제어 : 변경사, 변경, 국경, 지대, 선, 영토, 네르친스크조약, 북경조약

I. 머리말

“(세종 대의)북방개척은 농토의 확장과 아울러 천연의 요새를 국경선으로 삼으려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며, 이를 위하여 몇 차례의 이민을 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오늘날의 한국의 국토가 완성된 것이다.”¹⁾ 이 문장은 오랫동안 대표적인 한국사 개설서로 ‘군림’해왔던 『한국사신론』에서 인용한 것인데, 오늘날 한국인들의 국경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는 문장으로 손색이 없는 듯하다. 아마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국경과 영토에 대한 이런 인식을 어릴 때부터 되풀이해서 주입받고 교육받아 왔을 것이다.

요컨대 15세기 초반 세종대의 북방지역 개척에 의해 자연의 요새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국의 국경이 ‘확정’되었으며, 영토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한국인들의 국경인식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천연의 요새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흔들림 없는 경계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데에 대한 강한 신뢰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 이기백(1992), 『한국사신론』, 일조각, p.257.

그러나 조선조 초기 세종대에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한국의 국경이 확정되고 영토가 완성되었다는 인식은 과연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이는 20세기 국민국가 시대의 국경인식을 5백여년 전으로 소급해서 적용한 것은 아닌가? 한국학계에서 처음으로 이런 방식의 국경 이해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서양사연구자인 임지현이었다. 그는 서양의 변경 연구(frontier study) 성과와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각종 역사논쟁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아보려 하였다. 학술회의의 성과를 모아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²⁾이라는 단행본을 출간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이런 변경 연구의 문제의식이 한국학계의 관련 연구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변경연구가 시작된 유럽이나 미국에서조차 변경과 관련한 용어나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고정적이고 통일적인 변경모델을 창출하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³⁾

근래 조선과의 변경지역을 空閑地로 비워두는 청조의 정책 즉 虛邊政策을 이른바 ‘변경사’(border history)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김선민에 의해 제기됨으로써 변경연구에 대한 관심이 새삼 환기되고 있다.⁴⁾ 또 로빈슨은 15-16세기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조선의 동북부 변경지역 상황을 분석하였는데, 여진인이 조선의 국가체제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은 채 조선인과 상호 충돌-갈등하며 생활하고 있었음을 밝혀내고 있다.⁵⁾ 이 연구들은 변경지역의 상황에 대한 주목할 만

2) 임지현 편(2004),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 휴머니스트. 이 책은 외국의 변경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동아시아지역의 변경문제를 탐색한 연구성과를 담고 있다.

3) 박혜정(2015), 「변경에서 중심읽기 : 변경에서 보는 유럽 근대국가와 유럽 연합」, 『역사학보』 228 참조. 박혜정은 frontier, borderland, border region 등 변경과 관련된 용어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매우 혼란스럽게 사용되어 왔음을 밝히고 있다.

4) 김선민(2013), 「한중관계사에서 변경사로: 여진-만주족과 조선의 관계」, 『만주연구』 15.

5) Kenneth R. Robinson(2010), “Residence and foreign relations in the Peninsular

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나, 분석의 초점을 국경 혹은 변경에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학계에서의 ‘변경연구’ 작업은 국경이 ‘선’ 개념으로 확정된 것은 그다지 오래 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었고, 지금은 이런 인식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국민국가 시대의 국경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국경 혹은 변경이 일정한 ‘地帶’(zone)로 존재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선 개념의 국경이 자리잡기 전에는 지대 개념의 ‘변경지대’가 경계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변경연구의 성과를 통해, 인류사의 과정에서 정치체들의 경계는 크게 보아 “지대로부터 선으로” 이행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정치체 사이의 경계가 지대로 존재할 때에는 그 변경지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포함하여 양쪽지대를 넘나드는 사람들의 이동성이 더 높았을 것이다. 이를 다공성(porosity)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경계가 지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에 비례하여 그 양쪽을 오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더 약했을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계가 지대로부터 선으로 이행할수록, 양쪽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의 이동성은 약해지게 되었다. 이는 곧 정체성이 강화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로써 선 개념의 국경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영토’ 개념도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선으로서의 국경이 확정되지 않은 채 변경지대가 널리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명확한 영토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 단지 변경지대는 그 너머에 존재하는 적대적 세력의 침략을 방어하는 데에 도움을 주거나, 변경 밖의 化外세력이 투항하여 教化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완충지역’ 혹은 ‘접지역’ 일 따름이었다.

이 글은 조선 초기부터 근대에 이르는 시기를 대상으로 한반도의 북

Northeast During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Sun Joo Kim ed., *The Northern Region of Korea: History, Identity and Culture*,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쪽 변경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였는가를 살피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조선 초기 명과 마주하고 있을 때에는 변경이 지대로 존재하였으나, 청과 백두산에서 '정계'작업을 한 뒤에는 차츰 지대가 좁아져서 선의 방식으로 전이되어 갔을 것이다. 하지만 영토주의적 인식론(territorialist epistemology)에 기반을 둔 국경개념이 동아시아지역에서 정착하기 시작한 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청과 일본이 개입된 복잡한 국경-영토 분쟁을 거치면서 조선 내부의 영토주의적 인식론은 점차 확산되고 정착되어 갔던바, 이 과정을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 네르친스크조약과 조선의 변경지대 인식

1. 17세기 말 이전 변경지대의 상황

조선 초기 한국인들은 요동지역 곧 遼河의 동쪽지역을 조선의 '옛 영토'(故地)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런 인식은 요동지역에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의해 강화되었다. 元 왕조 말기에 요동지역의 중심도시였던 요양(遼陽)이나 심양(瀋陽)에는 대규모 고려인 집단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고려왕조의 정부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기도 하였다. 원 왕조의 권위가 약화된 고려 말기에 이르러 여러 차례 요동 원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이는 주로 요동에 거주하는 고려인 집단의 군사적,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다.⁶⁾

세종 때에 조선왕조의 창업을 기리기 위하여 만든 『용비어천가』에는, 고려 왕조 후기 공민왕의 명으로 요동 공략에 나섰던 이성계가 요

6) 야기 다케시(矢木毅), 박결순 역(2015), 『한국사의 계보』, 소와당, pp.180-183.

동 지역에 붙었다는 榜文이 실려 있다. “우리나라는 요임금 때로부터 중국과 나란히 세워져왔다. 주나라 무왕은 기자를 조선에 봉하여 따로 이 경계를 세워 주어 서쪽으로는 遼東河에 이르러 대대로 국경을 지켜 왔으며(하략)”(42장)⁷⁾라는 내용인데, 고려 말기 요동 원정에 나섰던 사실을 바탕으로 요동지역이 옛 영토였음을 확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을 것이다.

요동지역을 조선의 옛 영토로 간주하는 이런 조선인들의 생각은, 15세기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요동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반드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근래 17세기 이전 명 혹은 청과 경계를 맞대고 있던 만주지역 변경지대의 상황을 검토하여, 중립지대 혹은 완충지대라는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연구가 등장하여 이목을 끈다. 이들 연구는 이 시기 만주지역의 변경은 선이 아니라 ‘면’으로 존재하였음을 강조하고,⁸⁾ 면으로서의 ‘국경지대’가 가졌던 성격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 시기 변경지역 상황을 요약해보자. 명이 요동지역 지배를 위하여 설치한 遼東都司는, 명 초기에는 遼陽 근처의 連山關 지역까지만 실질적인 지배가 미치고 있었고 주로 방어적인 측면에 치중하고 있었다. 영락제 이후 요동 지역 지배의 확장을 시도하였으나 그 영향력은 미미하였다고 한다.⁹⁾ 따라서 명이 변경 관리를 위해 설치하였던 遼東邊牆으로부터 조선의 북방 변경지대 사이에는 여진인이 할거하고 있었으며, 그 사이의 광활한 지역은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었다.¹⁰⁾

7) 박창희 역(2015), 『역주 용비어천가』 하,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p.115.

8) ‘변경지역’을 선과 대비되는 면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또 모호하다. 변경지역의 구체성을 드러내는 데는 면이라는 추상명사보다는 지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또 zone의 번역어로 보더라도 지대가 면보다는 더 적합하다.

9) 남의현(2008), 『명대요동지배정책연구』, 강원대학교출판부.

10) 유재춘(2002), 「15세기 명의 東八站 지역 점거와 조선의 대응」, 『조선

요양과 압록강 사이에 설치한 遼東 八站 곧 8개의 역참은, 조선의 주요 사행로였음에도 15세기까지 거의 관리되지 못했다고 한다. 1480년대가 되어서야 명은 요동팔참 중 하나인 봉황성 지역에 군사를 파견하고 城堡를 수축하여 지배를 확립할 수 있었다.¹¹⁾ 제주도에서 중국으로 표류했다가 요동지역을 거쳐 귀국한 최부의 기행문인 『표해록』에 의하면, 15세기 후반 요동지역 주민의 약 3분의 1은 조선계였고, 더욱이 요양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이른바 동팔참지역의 주민은 모두 조선의 유망민이었다고 한다.¹²⁾ 요컨대 명시기 조선의 변경 정책의 본질은 조선인의 이탈방지 혹은 명의 위협을 방어하는 데 그 중점이 놓여있었던 것이다.¹³⁾ 따라서 명 시기에는 압록강이 조선과 명의 국경선으로 전혀 기능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하겠다.¹⁴⁾ 또 청 초기까지도 압록강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던 鳳凰城 근처에 柵門이 있었고, 그 지역은 封禁地帶로 묶여 있었다.¹⁵⁾ 따라서 청 초기의 압록강도 조선의 변경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유재춘은 청 초기까지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두 강의 北岸地域을 곧바로 명, 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새로 ‘국경 완충지대’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을 제시한다. 이에 반해 남의현은 ‘국경 중립지대’라는 개념을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면으로서의 변경지대가 존재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제기한 두 가지 개념 곧 유재춘의 ‘국경 완충지대’와 남의현의 ‘국경 중립지대’ 개념은 한국학계의 변경지역 개념 혹은 국경 개념을 쇄신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시대사학보』 18; 유재춘(2006), 「15세기 전후 조선의 북변 양강지대 인식과 영토 문제」, 『조선시대사학보』 39.

11) 남의현, 앞의 책.

12) 최부, 『漂海錄』; 야기 다케시, 앞의 책, pp.184-186에서 재인용.

13) 유재춘, 앞의 「15세기 명의 東八站 지역 점거와 조선의 대응」; 앞의 「15세기 전후 조선의 북변 양강지대 인식과 영토 문제」.

14) 남의현, 위의 책.

15) 유재춘(2011), 「중근세 한중간 국경완충지대의 형성과 경계인식」, 『한일관계사연구』 39집.

지대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국경완충지대든 국경중립지대든 개념의 착종이 심하고 명료하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국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변경이 지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흐리고 있으며, 그 지역의 성격을 완충 혹은 중립으로 설립하여 그 시대적 성격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연구가 만주지역 변경지대의 변화 양상을 살피는 데에 매우 유효한 개념을 제공하고 있음은 새삼 강조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2. 네르친스크조약과 조·청 ‘정계’

청조 초기 강희제가 내정을 안정시킨 후인 1689년, 청조는 처음으로 러시아와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몽골의 북쪽 경계지역인 네르친스크에서 맺어진 이 조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양자 간의 관계가 호혜-평등에 입각해있다는 점이었다. 네르친스크의 조약의 前文은, 청의 강희제를 ‘가운데 나라의 성스러운 황제’로 러시아의 표트르 1세를 ‘오로스 나라의 차간 한’으로 표기하여, 두 주권자의 지위를 대등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조약의 각 조항에는 양자의 동등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어 1727년 맺어진 카흐타조약의 전문에는 옹정제를 ‘다이칭 나라의 황제’라고 하고, 러시아 차르를 ‘오로스 나라의 카툰 한’이라고 불렀다. 카툰 한은 칸의 부인을 뜻하는 몽골어인데, 러시아 차르가 여제인 에카테리나 1세였기 때문에 쓴 말이라고 한다. 이 조약들에는 러시아인, 몽골인, 만주인, 예수회 선교사 등 네 당사자들이 참여하였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서구의 국제법을 소개하였고, 회담에서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의 청러관계를 19세기 중반 이후 불평등조약체제와 구별하기 위하여, 구범진은 네르친스크-카흐타조약 체제라고 부르고자 한다.¹⁶⁾ 그리고 이 조약들이 체결된 가장 중요한 원

인을 갈단의 침공(네르친스크조약), 준가르 문제(카흐타조약) 등에서 찾고 있다. 외부 침공의 위협이라는 절박한 요구 앞에서 국제법 원리에 입각한 조약 체결도 불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이다.¹⁷⁾

그러나 이런 논리는 당시 처한 변경지대에서의 곤란함이나 청 정부의 유연한 대응책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단순하다. 문제는 서구의 국제법이 전면적으로 청에 강요되기 이전에, 이미 청이 이를 감안하거나 혹은 모방하여 유럽의 낮은 세력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청조는 만주족 황실이 중심이 되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북쪽의 낮은 세력과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했던 것이다.¹⁸⁾

한편 양 조약이 변경문제와 관련하여 가지는 중요성은, 변경의 개념에 선 개념이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¹⁹⁾ 네르친스크 조약에서 ‘국경선’은 아무르강으로 흘러가는 고르비짜강과 아르군강으로 합의되었고, 이에 따라 러시아는 아무르강 유역의 땅을 모두 잃었으며 만주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단 봉쇄되고 말았다.²⁰⁾ 요컨대 예수회 선교사들이 소개한 서구의 국제법이란 이른바 베스트팔렌 조약에 입각한 것으로 ‘베스트팔렌 체제’라고 통칭되는 국제체제 혹은 국가간체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베스트팔렌 체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정치체가 주권을 가진 근대국가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16) 구범진(2012), 『칭나라, 키메라의 제국』, 민음사, pp.151-178 참조. 라틴어를 공용어로 하고, 러시아어와 만주어 및 몽골어를 조약체결의 언어로 선택하였으며, 한문으로 된 조약문은 만들지 않았다. 네르친스크조약이 갖고 있는 여러 특징에 대해서는 이 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7) 구범진, 앞의 책.

18) 박선영(2007), 「백두산정계비와 화이질서」, 『중국학보』 56집.

19) 하원호는 네르친스크조약을 ‘거점’ 중심의 영토의식을 국경선 개념으로 전환시킨 것이었다고 해석했다. 하원호(2006), 「개화기 조선의 간도인식과 정책의 변화」, 『동북아역사논총』 14.

20) 박명용(2005), 「연해주를 둘러싼 한국과 러시아영토문제」, 『북방사논총』 4호. 네르친스크 조약은 그런 점에서 엄밀하게 보면 ‘선과 지대의 조합’으로 변경지역을 확정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국경을 획정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 국경을 획정하고 이를 통하여 영토를 확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청은 서구의 국제법체제 곧 베스트팔렌체제의 끝에 자신을 걸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네르친스크 조약을 동아시아 국경 개념에서 ‘신기원’을 이루는 조약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처럼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 동북변의 국경을 안정시키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중반에 걸친 시기에, 청 왕조는 주변지역 청의 강역을 확장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었다. 1683년 대만을 회복하였고, 18세기 중반에는 티베트와 ‘신장지역’을 평정하였다.²¹⁾ 따라서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을 통한 변경지역 안정화 시도는, 청의 근대제국화 시도와 깊은 관련을 가진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청의 ‘근대제국화 시도’라는 명제는 내가 동아시아사 인식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만든 개념이다. 청 왕조는 17-18세기에 걸친 1차 근대제국화 시도에 이어, 19세기 후반에 2번째의 근대 제국화 시도를 수행하였다고 본다.²²⁾ 18세기 청과 러시아는 초원을 둘로 나누어 명확한 국경선을 만들고 팽창의 한계를 확정함으로써 모호한 변경지대들을 없애려 하였다. 이 두 제국은 점점 더 영토권(territoriality)에 초점을 맞추어둘 사이의 광대한 공간을 분할하여 점유함으로써 그 사이의 어떤 대안세력도 남겨두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²³⁾

이로써 청은 자신의 북방지역만을 대상으로 베스트팔렌체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 청은 한쪽 다리는 베스트팔렌 체제에 건 채로, 다른 쪽 다리는 아직 예전의 조공체제를 굳건히 딛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측면이 청의 제1차 제국화시도가 갖는 특성이라고 해도 좋겠다.

3. 조선 후기의 변경지대 인식

21) 張華(2015), 「근대 이래 중국 국경의 변천과 영토인식」, 『역사와교육』 20집.

22) 윤해동(2013),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를 보는 방법 - 제국과 근대국가 그리고 지역」, 『동북아역사논총』 40호.

23) 피터 C. 퍼듀, 공원국 역(2012), 『중국의 서진』, 도서출판 길, pp.57-695. (원저는 Peter C. Perdue(2005), *China Marches West*, Harvard University Press)

청의 입관 이후 만주지역에는 만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柳條邊을 축조하였다. 물론 이는 북으로 몽골 그리고 남으로는 조선을 방어하는 경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압록강으로부터 유조변에 이르는 변경지대에서는 이른바 ‘월경’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1690년대 이후 청조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변경지대 조사를 요구하고 있었다.²⁴⁾ 더욱이 『大清一統誌』 편찬에 따라 압록강과 두만강의 상류지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1712년 이른바 ‘백두산정계비’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한중 양국의 학계에서는 어떤 공통점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독자적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든 한국이든 한쪽에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라는 점도 명확하고, 민족주의적 편향성이 해석의 편차를 줄이는 데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 또한 명확하다. 그러나 양측의 연구에는 사실을 둘러싼 사료의 채택이나 논의의 전제에도 큰 문제가 있는 듯하다. 우선 정계가 청의 자체 內部査界인지 조청의 共同定界인지에조차 명확하게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계의 내용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는 더욱 크고 심하다.

그러나 명대와 청 초기까지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査界·定界하는 작업이 청 정부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청의 세계관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전에는 백두산 근처까지 명이나 청의 지배가 미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지역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또 압록강과 두만강이라는 자연적 요해처를 경계로 하고 있는 한, 백두산 지역의 산간 지역까지 그 경계를 ‘선’으로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는 발상이 있을 리 없었다.

네르친스크 조약에서 국경선을 중심으로 변경을 명확히 했던 경험

24) 박선영, 앞의 「백두산정계비와 화이질서」.

은, 그 후 청의 변경지대 경계 확정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강희제 통치 시기인 1712년 이른바 조선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백두산에서의 정계 작업은 네르친스크 조약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변경지대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국경이 확정적으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역시 사실이다. 청은 백두산 지역을 조사하여 ‘정계비’를 설치함으로써 유조변으로부터 압록강 혹은 두만강 사이에 존재하던 변경지대를 자신의 관할지역으로 편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유조변 확장공사를 꾸준히 진행하였고 월경문제에 엄격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 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²⁵⁾

요컨대 정계 이전 명-청 초기 시기에는 ‘변경지대’가 봉황성 근처의 책문에서 폐사군 사이의 넓은 지역에서 존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따라서 1712년 이후 조선도 定界 작업을 통하여 자신의 영토를 확대하였으며, 백두산 천지 남쪽의 공지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측면이 있었다. 조선 초기 압록강 상류에 설치되었던 4군은 15세기 후반까지는 모두 廢郡되었으며, 만주인이 자주 이 지역을 출입함으로써 분쟁이 야기되어 왔던 것이다. 정계를 통하여 영토를 상실하였다는 주장은 정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난 것이었다.²⁶⁾ 여러 사례를 통해 보면, 정계비 설치 이후 북쪽 경계로는 압록강을 의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봉황성에서 寧古塔까지는 모두 6개의 邊門이 있었으니 첫 번째를 柵門, 두 번째를 靉陽門, 세 번째를 讎廠門(감창문), 네 번째를 英額門, 다섯 번째를 汪淸門, 여섯 번째를 威遠門이라고 했다. 구불구불한 거리가 2천여리나 되었는데, 모

25) 박선영, 위의 글. 박선영은 백두산정계 작업이 청의 영역 확장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점을 정당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네르친스크조약과 달리 백두산정계비는 청의 화이관에 입각하여 체결됨으로써 국경획정에 실패하였다고 보아, 양자를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6) 이화자(2011), 『한중국경사 연구』, 혜안, pp.107-121.

두 압록강으로 경계를 삼고 있었으니 다른 문도 이와 같다고 한다.”라는 기술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세기 초 북경에 사신으로 다녀온 박래겸의 여행기에 나오는 것이다.²⁷⁾

한편 한국 학계의 ‘백두산정계’ 연구는 주로 두만강 수원을 둘러싼 조선의 堆柵(石堆, 土堆, 木柵) 이설 경위를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백두산의 수원을 잘못 정한 원인을 둘러싼 책임논쟁의 성격을 띠고 진행되고 있다. 물론 중국학계의 연구 역시 한국의 연구를 뒤집어놓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거꾸로 방불하다.²⁸⁾ 그러나 이 문제가 합리적 해석을 획득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미 정계비와 아울러 설책과 관련한 모든 증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계 이후 18-19세기에 걸친 조선의 두 가지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이 시기 조선의 변경-국경 인식을 살펴보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 하나는 土門江·分界江 인식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계로 인한 영토득실론이다.

토문강과 두만강은 두 개의 강이고, 토문강이 분계강이었다는 주장은 정상기의 동국지도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를 수용한 신경준의 일련의 작업에 의하여 논리를 획득하였다. 요컨대 토문강은 分界江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이고, 백두산에서 발원한 토문강의 수원은 중간에 복류하였다가, 분계강(해란강)으로 나타나서 두만강으로 합류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넓은 지지층을 확보하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익이나 홍양호 등의 실학자들에 의해 토문-두만 2강설은 부정되었으며, 분계강 인식도 사라지고 말았다.²⁹⁾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 급증한 월경 이주자들을 통하여 정확한 지리정보가 입수되면서 토문강·분계강 개념은 급속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³⁰⁾

27) 朴來謙, 조남권 박동욱 역(2015), 『沈使日記』, 푸른역사.

28) 이화자, 같은 책.

29) 이화자, 앞의 책, pp.72-105.

30) 이강원(2007), 「조선후기 국경 인식에 있어서 豆滿江·土門江·分界江 개념과 그에 대한 검토」, 『정신문화연구』 30권 3호.

토문강·분계강 설과 관련하여, 정계 작업이 부실하여 두만강 7백리 이북에 있는 공험진과 선춘령을 중심으로 한 영토를 상실하였다는 논의가 실지론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이런 논의 역시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다른 한편 압록강 연안의 폐사군 개발과도 맞물려 일각에서는 요동수복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³¹⁾ 물론 이런 논의가 소중화사상과 맞물려 북방영토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 것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지리인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그다지 큰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 역시 명확한 사실이다.³²⁾ 전체적으로 북방영토에 관한 관심보다는 백두산 정계 이후 오히려 백두산 이남의 변경지대 곧 폐사군 지역의 개간과 확보에 주력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직 조선의 경계인식은 변경지대와 국경 인식이 혼합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리라.

Ⅲ. 북경조약과 변경지대 인식 변화

1. 북경조약과 새로운 조·청관계

러시아는 1858년 아이훈 조약을 통하여 아무르강 좌안을 러시아령으로 확보하고, 아무르강 하구 이남지역을 공동관리지역으로 정함으로써 네르친스크 조약에서 남겨진 변경 지역을 국경 ‘선’으로 확정하였다. 이어서 아이훈조약에서 확보한 공동관리를 근거로 1860년 북경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우수리강 동쪽의 이른바 연해주지역을 ‘약탈’하였다.³³⁾

31) 강석화(2007), 「19세기 북방강역에 대한 인식」, 『역사와 경계』 65.

32) 이화자, 앞의 책, pp.106-121. 공험진과 선춘령이 함경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대 역사학의 성과에 의해 명확하게 되었다.

33) 박명용, 앞의 글; 심현용(2005), 「러시아의 극동진출 전략과 국경을 둘러싼 조·러양국의 대응」, 『군사』 56호; 이완중(2004), 「러시아의 극동진

아이훈조약과 북경조약을 통하여 러시아가 시베리아·연해주지역을 확보할 수 있었던 근거는, 네르친스크조약이 가진 조약체계의 대등성 바로 그것이었다.³⁴⁾

북경조약으로 청은 우수리강 이동지역과 포시에트 만을 잃어 바다로 향한 출구를 완전히 봉쇄당했다. 반면 조선은 동해로 흘러가는 두만강을 경계로 러시아와 경계를 접하게 되어 조·러간 국경을 확정하게 되었다. 조선은 외교권을 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경을 확정하는 조약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북경조약의 최대피해자는 조선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정도이다.³⁵⁾

북경조약 이후 청조는 만국공법체제 하의 역관계에 의한 노골적인 경쟁체제에 노출되었던 것이고, 이에 청 정부는 자구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훈·북경 조약 이후, 청이 만국공법 아래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확정하고 영토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사업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국경선을 확정하여 영토를 명확히 하며, 영토로 확보된 지역에 대해서는 통치권을 균질적으로 행사할 필요성이 고조되었다. 이를 위해 ‘直省主義’를 지배지역 전체로 확장하여 변경지역을 ‘중국화’하고, 번부를 폐지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나는 청의 건설작업과 중국화정책을 청의 제2차 제국화 시도라고 규정한 바 있다.³⁶⁾ 일찍이 오웬 라티모어는 이를 두고 이류 제국주의(Second Imperialism)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³⁷⁾ 지극히 강한 서구중심주의에 입각한 입론이지만, 청의 근대 제국적 면모를 지적한 선구적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출과 중-러 국경획정과정 연구」, 『북방사연구』 4호.

34) 심헌용, 위의 글.

35) 녹둔도를 둘러싼 한러간 국경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북경조약으로 소급할 수 있다. 심헌용, 위의 글.

36) 윤해동, 앞의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를 보는 방법 - 제국과 근대국가 그리고 지역」.

37) Owen Lattimore(1962), *Inner Asian Frontiers of China*, Beacon Press.

1870년대 신장지역은 양면에서 위기에 처했다. 북에서는 러시아가 일리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였으며, 텐산 남에서는 야쿵 백 정권이 수립되었던 것이다. 청은 左宗堂의 주도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일으켜 신장지역을 정복하고, 신장 통치체제를 일신하여 1884년 신장성을 설치하고 주현체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비록 청시기에는 몽골과 티베트에 성이 설치되지는 않았으나, 마찬가지로 중국화의 물결은 피해가지 못했다. 몽골에는 18세기부터 한인이 진출하여 농지개간이 시작되었으며, 1900년에는 유목지역 봉금이 해제되었다. 티베트에서는 1904년 라싸조약을 전후하여 영국의 침략이 노골화하였으며, 스완 서부 티베트인 거주지역에 분쟁이 발생하자 무력으로 진압하고 주현을 설치하였다. 이 두 지역에는 중화민국 시기에 각각 성이 설치되었다. 만주지역에서는 19세기 전반 한인 이주민을 관리하기 위하여 장군제도를 설립하였고, 주방괄기제를 포기하고 주현제도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후반부터 주현체제가 설치되기 시작하여, 1907년 동삼성 설치로 직성화가 완성되었다.³⁸⁾

이런 일련의 정책 가운데 조선을 ‘속국화’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졌다. 우선 1882년에 만들어진 조청간의 협정 곧 ‘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은 자신들이 원하는 “근대적인 從屬體制”에 부합하는 각종 제도와 형식을 만드는데 부심하였다. 1870년대 후반 러시아에 의해 촉발된 일리지역 위기가 조선에 대한 위기의식을 부추기고 있었으며, 이에 청은 조선이 만주지역 방어를 위한 완충국으로 보전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청일전쟁 이전까지 10여년 동안 조선정부에 대한 철저한 간섭과 지배 등을 통하여 “전통적인 宗屬體制” 하에 조선이 향유하던 자주를 침범하고 서구의 식민지화 정책을 모방하여 속국화정책 즉 식민지화 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³⁹⁾ 조선에 대한 “근대적 속국화정책”은

38) 구범진, 앞의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

39) 김기혁(1996), 「李鴻章과 청일전쟁」, 『청일전쟁의 재조명』, 한림대 아

청의 ‘제2차 제국화 시도’가 드러낸 전형적인 모습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2. 개항기 변경 인식의 변화

조선정부의 요구에 의해 조선과 청 정부 간에는 1885년(‘을유감계’), 1887년(‘정해감계’) 두 차례에 걸친 勘界會談이 열렸다. 감계 곧 조선과 청 사이의 경계를 다시 정하는 회담을 시작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정세가 반영되어 있었다. 첫 번째 변화는, 18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양강 이북지역으로의 조선인들의 이주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감계회담에 대한 이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1867년 청은 동북지역에 대한 封禁政策을 철폐하고 이주와 개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1881년 청이 간도 지역을 본격적으로 개간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조선인 유망민들이 거주하면서 경작에 종사하고 있었다. 1880년대 들어 특히 간도지방에서는 개간의 주도권을 둘러싼 조선인들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었다.⁴⁰⁾

두만강 이북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조선인들은 중국관헌의 감독이 심해지자 본국의 보호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본국에는 국경선을 월경하면 처벌한다는 법률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간도지방에 이주한 조선인들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간도 지역이 본래 분계강 이남의 조선 영토에 속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1883년 서북경략사로 경원에 있던 어윤중은 백두산정계비를 재조사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변경민들의 주장을 근거로 분계강(해란강) 이남의 간도지역이 조선에 속한다는 주장이 공식적으

시아문화연구소.

40)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있다. 대표적으로 윤희탁(2001), 「변지에서 내지로: 중국인 이민과 만주국」, 『중국사연구』 16; 하원호, 앞의 글 참조.

로 제기되었다.⁴¹⁾

다른 하나의 변화는 화이질서가 차츰 이완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요컨대 ‘宇小事大 大小之分’(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보듬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모시는 것 곧 크고 작은 나라의 구분이 있는 것 - 인용자)으로부터 ‘四瀛交涉 無大無小’(전세계 모두 나라의 교섭에 크고 작은 나라의 구분이 없는 것 - 인용자)로의 관념의 변화가 동반되고 있었던 것이다. ‘무대무소’라는 자세에 입각한 조선정부의 교섭에 대한 요구는 그 이전에는 청에 의해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었다.⁴²⁾ 이는 청의 속국화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새로운 감계회담에 대한 조선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국제적인 정세가 작용하고 있었던 데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1883년 어윤중이 길림통상장정 체결 과정에서 간도문제를 제기했지만, 청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1884년 두 차례에 걸쳐 ‘조러밀약설’이 제기되자 청은 즉시 조선측의 감계협상 제안을 수용하였다.

1885년의 1차감계에서 양국의 대표는 토문강과 두만강이 같은 강인지(곧 1江2稱) 서로 다른 강인지(2江2稱)에 대해 공식적인 합의를 끌어 내지 못했다. 그러나 조선 대표 이종하는 비밀보고에서 석퇴·토퇴와 목책의 자취가 두만강 상원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토문강과 두만강이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강’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또 1887년 2차감계에서는 두만강 상류를 홍토수(조선의 주장) 혹은 석을수(청의 주장) 가운데 하나로 정하는 데까지는 합의하였으나, 이 가운데 하나를 수원으로 정계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후 청조의 강압에 의해 논의가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는 데에는 결국 실패하였다. 요컨대 백두산의 수원을 정하는 데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두

41) 야기 다케시, 앞의 책, pp.21-229.

42) 아키즈키 노조미(2009), 「화이질서에서의 경계지대와 국제법적 ‘국경」, 동북아역사재단 편, 『근대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동북아역사재단, pp.277-316.

번의 담판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토문강 이북 곧 두만강 이북지역에 대한 변경민들의 영토적 요구 역시 수용되지 못했다.⁴³⁾

그러나 이 두 번의 감계작업을 통하여 조선에도 선에 의한 국경 개념을 바탕으로 한 영토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에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북경조약에 의해 강요된 조·러간의 국경선 확정 에 이어 조·청간의 국경선 확정작업이 이어짐으로써, 이제 조선에도 국경이 선으로 구성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이런 인식상의 변화는 영토 관념에 변화를 불러오고, 영토 확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됨으로써, 근대적 영토의식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고종은 황제 즉위 조서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단군이 은둔했던 ‘아사달’의 땅에서 단군의 정통을 이은 조선의 원수가, ‘삼한’의 통합자 즉 대한의 황제로 즉위한다고 했던 것이다. 이어 고종은 고려가 통일한 삼한의 땅을 바탕으로, 북으로는 말갈의 영역과 남으로는 탐라의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 조선의 영역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즉위에 앞서 거행되었던 환구단 제천 의례에서는 “雪山(백두산)을 鎮으로 하고, 黑江(송화강, 흑룡강)을 경계로 한다”고 하여 중국 동북부 지역에 대한 영토적 욕심을 드러내기도 하였다.⁴⁴⁾ 이러한 근대적 영토의식은 선에 의한 국경개념이 정착함으로써 더욱 확고한 영역 개념으로 정착해갔던 것이다.

청일전쟁에서 청국이 패배하자 조선은 청의 속국화 시도 나아가 내정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1899년 조·청간에 ‘한·청통상조약’이라는 근대적인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이후 대한제국이 간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식민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⁴⁵⁾

43) 하원호, 앞의 글; 이왕무(2008), 「19세기말 조선의 강역인식 변화」, 『역사와 실학』 37; 이화자(2011), 『한중국경사 연구』, 혜안, pp.123-171.

44) 야기 다케시, 앞의 책, pp.233-240.

45) 은정태(2005), 「1899년 한청통상조약 체결과 대한제국」, 『역사학보』 186집.

1902년 한국 정부는 이범윤을 북간도시찰사로 파견하고, 두만강 이북에서 개간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또 경원의 金魯奎는 『北興要選』을 편찬하여 두만강 이북지역이 조선의 영역임을 역사적, 현실적으로 증명하려 하였다. 물론 이런 작업은 두만강 이북으로 이주한 변경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후 북쪽 변경 지역 영토를 둘러싼 영토 민족주의를 촉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한제국 정부의 간도영유화 정책은 현지인을 보호하고 간도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식민주의적 의도를 포함한 것이었다. 이는 영토를 확보함과 아울러 ‘민족’ 집단의 보호를 내세운 정책이었던바, 근대 ‘제국’의 식민지 확장정책의 면모를 가진 것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⁴⁶⁾

1903년 들어 대한제국이 간도에 대한 사실상의 영유정책을 추진하면서, 간도문제는 한국에서 국민적인 차원으로 확산되었다. 김노규의 저작이 간행된 것과 아울러, 장지연은 1903년 『황성신문』에 「我韓疆域考」를 연재하여 간도지역이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였음을 주장하였다. 장지연은 지리를 역사의 일부로 파악하여, 강역의 수축과 팽창을 역사의 일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영토의식을 드러내었다. 또 간도일대가 한민족의 고토였음을 강조하고 고토회복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었다.⁴⁷⁾

VI. 맺음말

‘영토의 텃’이라는 말이 있다. 영토라는 공간은 처음부터 자명한 것으로 주어지는, 혹은 자연적인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

46) 은정태, 위의 글; 하원호, 앞의 글; 은정태(2007), 「대한제국기 ‘간도문제’의 추이와 ‘식민화’」, 『역사문제연구』 17호 참조.

47) 박민영(2005), 「장지연의 북방강역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집.

의한 개입이나 조작에 의해 인공적으로 생성된 것이 영토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영토 자체를 자의적으로 분할하여 논의할 때에 발생하는 함정을 이르는 말이 곧 영토의 덧이라는 것이다.⁴⁸⁾ 게다가 영토에 의미를 부여하여 그 공간을 성역화하게 되면, 그 영토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현대 한국인들은 15세기 초반 세종대에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영토가 완성되었다는 인식을 역사교육을 통해 되풀이하여 교육받는다. 그러나 백두산을 중심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이 자연적인 경계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인식이다. 그럼에도 이런 역사인식을 유지하고 그에 심각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영토의 덧에 빠질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

이 글에서는 경계 개념이 ‘지대로부터 선으로’ 이행해왔다는 기존 변경연구의 성과를 수용하여, 15세기 이후 한국의 북쪽 변경이 변화해온 양상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북쪽 변경에 변화가 생기는 두 가지 큰 계기를, 17세기 초반의 네르친스크조약과 19세기 중반의 북경조약으로 설정하였다. 두 조약은 모두 청과 러시아 사이에 맺어진 것이었으나, 그것이 조선과 청 그리고 러시아 사이의 경계에 물고 온 변화는 심대한 것이었다.

우선 네르친스크 조약을 계기로 조선과 청 사이에도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정계작업이 수행되었고, 백두산의 두만강 ‘수원’에 백두산정계비가 설치되었다. 청과 러시아는 영토의식에 기반을 두고 광대한 변경지역을 분할함으로써, 근대적 국경개념을 강화하였다. 이런 의식은 백두산정계비 설치에도 반영되었던 것이다. 그 이전까지 광대한 변경지대로 존재하던 요동지역을 둘러싼 변경의식은, 백두산정계비 설치 이후

48) 이와시타 아키히로(2015), 「일본의 영토분쟁: 정리와 전망」, 와다 하루키 외, 『독도문제는 일본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 제이앤씨, pp.159-178.

차츰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변경의식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아무르조약과 북경조약을 통하여 러시아는, 시베리아의 광대한 국경을 확정함과 아울러 우수리강 이동의 연해주지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청 역시 18세기에 확장한 주변지역을 적극적으로 영토로 편입하는 정책을 구사하였다. 또 조선이나 베트남과 같은 조공왕조를 근대적인 예속관계로 편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 시기에 조선의 요구로 백두산지역의 국경을 확정하려는 회담이 두 차례 개최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조선의 국경 개념과 영토의식은 확고하게 정착하게 되었다. 이후 추진된 대한제국의 ‘간도 영유화’ 정책은 근대적 민족주의가 정착하면서 ‘영토민족주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경이 확정되면서 사람들의 이동에는 제약이 가해지고, 주민들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작업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에도 영토개념이 정착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제국은 근대국가로서의 국민통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1905년 이후 간도문제는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였고, 국경선을 경계로 확정된 영토가 민족주의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간도영유권 문제는 청일간의 협상의제로 전환하였고, 이를 계기로 근대적인 ‘민족’의식이 대두하면서 ‘강역계승의식’ 나아가 ‘영토적 민족주의’는 더욱 확산되어 갔던 것이다.⁴⁹⁾

V. 목차

본문을 여기다가 넣어 주세요.

49) 백동현(2005), 「한말 민족의식과 영토관」, 『한국사연구』 129.

參 考 文 獻

- 구범진(2012), 『칭나라, 키메라의 제국』, 민음사
- 남의현(2008), 『명대요동지배정책연구』, 강원대학교출판부
- 朴來謙, 조남권 박동욱 역(2015), 『沈使日記』, 푸른역사
- 박창희역(2015), 『역주 용비어천가』 하,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야기 다케시, 박결순 역(2015), 『한국사의 계보』, 소와당
- 이기백(1992), 『한국사신론』, 일조각
- 이화자(2011), 『한중국경사 연구』, 혜안
- 임지현 편(2004),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 휴머니스트
- 피터 C. 퍼듀, 공원국 역(2012), 『중국의 서진』, 도서출판 길
-
- 강석화(2007), 「19세기 북방강역에 대한 인식」, 『역사와 경계』 65
- 김기혁(1996), 「李鴻章과 청일전쟁」, 『청일전쟁의 재조명』,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 김선민(2013), 「한중관계사에서 변경사로: 여진-만주족과 조선의 관
계」, 『만주연구』 15
- 박명용(2005), 「연해주를 둘러싼 한국과 러시아영토문제」, 『북방사
논총』 4호
- 박민영(2005), 「장지연의 북방강역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집
- 박선영(2007), 「백두산정계비와 화이질서」, 『중국학보』 56집
- 박혜정(2015), 「변경에서 중심읽기 : 변경에서 보는 유럽 근대국가와
유럽연합」, 『역사학보』 228
- 백동현(2005), 「한말 민족의식과 영토관」, 『한국사연구』 129
- 심현용(2005), 「러시아의 극동진출 전략과 국경을 둘러싼 조·러양국
의 대응」, 『군사』 56호
- 아키츠키 노조미(2009), 「화이질서에서의 경계지대와 국제법적 ‘국
경」, 동북아역사재단 편, 『근대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동북아역사재단

- 유재춘(2002), 「15세기 명의 東八站 지역 점거와 조선의 대응」, 『조선시대사학보』 18
- 유재춘(2006), 「15세기 전후 조선의 북변 양강지대 인식과 영토 문제」, 『조선시대사학보』 39
- 유재춘(2011), 「중근세 한중간 국경완충지대의 형성과 경계인식」, 『한일관계사연구』 39집
- 윤해동(2013),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를 보는 방법 - 제국과 근대 국가 그리고 지역」, 『동북아역사논총』 40호
- 윤휘탁(2001), 「변지에서 내지로: 중국인 이민과 만주국」, 『중국사연구』 16
- 은정태(2005), 「1899년 한청통상조약 체결과 대한제국」, 『역사학보』 186집
- 은정태(2007), 「대한제국기 ‘간도문제’의 추이와 ‘식민화’」, 『역사문제연구』 17호
- 이강원(2007), 「조선후기 국경 인식에 있어서 豆滿江·土門江·分界江 개념과 그에 대한 검토」, 『정신문화연구』 30-3
- 이와시타 아키히로(2015), 「일본의 영토분쟁: 정리와 전망」, 와다 하루키 외, 『독도문제는 일본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 제이앤씨
- 이완중(2004), 「러시아의 극동진출과 중-러 국경획정과정 연구」, 『북방사연구』 4호
- 이왕무(2008), 「19세기말 조선의 강역인식 변화」, 『역사와 실학』 37
- 張華(2015), 「근대 이래 중국 국경의 변천과 영토인식」, 『역사와교육』 20집
- 하원호(2006), 「개화기 조선의 간도인식과 정책의 변화」, 『동북아역사논총』 14

Kenneth R. Robinson(2010), “Residence and foreign relations in the Peninsular Northeast During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Sun Joo

Kim ed., *The Northern Region of Korea: History, Identity and Culture*,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Owen Lattimore(1962), *Inner Asian Frontiers of China*, Beacon Press

이 논문은 2017년 11월 20일 투고 완료되어
2017년 12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12월 20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결정된 것임.

K C I

<abstract>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the History of Korean Borders - Zones, Lines and Territories

Yun, HaeDong

at Korea's national border was fixed along the Yalu River and Tumen River as boundaries in the early part of the 15th century under the reign of King Sejong and that this marked the territory of "Korea" as we today know it. However, this understanding that the Yalu and Tumen Rivers, with Mt. Baekdu in between, served as natural boundaries is inconsistent with historical facts. So maintaining this view of history and placing serious meaning to it only increases the risk of falling into the territorial trap.

This paper investigated how the northern border of Korea has evolved since the 15th century, incorporating the insights of the border studies that demonstrate the transfiguration of the concepts of boundaries from "zones" to lines." The Treaty of Nerchinsk of the early 17th century and the Treaty of Beijing of the mid-19th century were identified as two important occasions that triggered changes in the northern border of Korea. Both Treaties were concluded between Qing and Russia, but the changes they brought to Joseon's border with these two countries were indeed immense.

I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with the demarcation of the national border, restrictions were placed on the movement of people while efforts to reinforce their identity were carried out. The Great Korean Empire now aggressively promoted policies of national integration as a modern state. The post-1905 years saw rising interest in the Jiandao issue on a national level, showing that territory as defined by national borders can serve as a factor

driving nationalism. The issue of Jiandao territorial rights became a matter for negotiations between Qing and Japan. This fueled modern-type "national consciousness," which led to increasing "awareness of the need for territorial succession" and ultimately, further expansion of "territorial nationalism."

Key Words : border history, border, boundary, zone, line, territory, the Treaty of Nerchinsk, the Treaty of Beijing

K C I

КСІ